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 원 명 희

2020년 6월 12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52호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임직원의 연봉기준표

(월지급액, 단위 : 원)

구 분	봉 급	비 고
사 장	<u>공무원 3급 22호봉</u>	

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수당 지급기준표

구 분	지급율 및 지급액	지급대상 및 기준
운영수당	· 월 기본급의 8%	· <u>직원</u>
시간외근무수당	· 통상임금/209×1.5×시간	· 직원 (<u>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</u> 대상자 제외)
야간근무수당	· 통상임금/209×0.5×시간	· 직원 (<u>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</u> 대상자 제외)
휴일근무수당	· 통상임금/209×1.5×시간	· 직원 (<u>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</u> 대상자 제외)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하되, 2020년 5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성 위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이 태 권 (390-7615)

현 행

[별표 5]

임직원의 연봉기준표

(월지급액, 단위 : 원)

구 분	봉 급	비 고
사 장	공무원 3급 15호봉	
일반 2급	공무원 4급 10호봉	<u>내부승진자는 해당 호봉 적용</u>

개정안

[별표 5]

임직원의 연봉기준표

(월지급액, 단위 : 원)

구 분	봉 급	비 고
사 장	<u>공무원 3급 22호봉</u>	
일반 2급	공무원 4급 10호봉	내부승진자는 해당 호봉 적용

현 행

[별표 6]

제수당 지급기준표

구 분	지급율 및 지급액	지급대상 및 기준
운영수당	· 월 기본급의 8%	· 임직원
시간외근무수당	· 통상임금/209×1.5×시간	· 직원 (직책급여업무추진비 대상자 제외)
야간근무수당	· 통상임금/209×0.5×시간	· 직원 (직책급여업무추진비 대상자 제외)
휴일근무수당	· 통상임금/209×1.5×시간	· 직원 (직책급여업무추진비 대상자 제외)

개정안

[별표 6]

제수당 지급기준표

구 분	지급율 및 지급액	지급대상 및 기준
운영수당	· 월 기본급의 8%	· <u>직원</u>
시간외근무수당	· 통상임금/209×1.5×시간	· 직원 (<u>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</u> 대상자 제외)
야간근무수당	· 통상임금/209×0.5×시간	· 직원 (<u>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</u> 대상자 제외)
휴일근무수당	· 통상임금/209×1.5×시간	· 직원 (<u>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</u> 대상자 제외)